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21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 상향	3

I. 개요

1.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2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성호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4. 6. 20.
- (3) 회 부 일 : 2024. 6.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공동부담을 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 상향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국가가 2분의 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u> 및 <u>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u>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u>의료급여수급권자의</u> ----- ----- ----- ----- ----- ----- <u>관리운영비(이하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이라 한다)의 전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담한다.</u> 1. 국가 부담분 : <u>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률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국가</u>
<신설>	

<신 설> ③·④ (생 략)	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의 총액에¹⁾ 2분의 1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 제1호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③·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음²⁾.

1) 개정안의 문구 중 "총액에"는 "총액의"의 오타로 이해됨.

2)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 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이하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 이외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서울 50%, 지방 80%)⁴⁾에 따른 금액을 부담하고 이 외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 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삭제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비교 >

구분	현행(시행령)	개정안(법률)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호)	지방자치단체 100%	국가 50% 이상 지방자치단체 50% 미만
이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국가 80% 지방자치단체 20% (단, 서울은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노인장기요양급여등에 관한 비용분담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등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⁶⁾.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인원은 2018년 10만 5,560명에서 2023년 17만 1,17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도 1조 3,784억 원에서 2조 5,35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6) 양주시의회,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2023.4.4.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급여 지원대상인원 및 비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기요양급여 지원인원(명)	105,560	119,142	132,976	148,753	160,375	171,179
비용부담(원)	13,784억	15,950억	18,298억	21,148억	24,528억	25,350억

(자료 :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관련 대통령령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국가가 2분의 1 이상 부담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대하여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등 관련 재정적 부담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이를 일부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의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연간 약 1조 4,729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등
국가부담 시 소요 예산('24년 기준)>**

국가부담비율	계		
	계	국가	지자체
90%	2조 9,458억원	2조 6,512억원	2,946억원
80%		2조 3,566억원	5,892억원
70%		2조 621억원	8,837억원
60%		1조 7,675억원	1조 1,783억원
50%		1조 4,729억원	1조 4,729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이용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였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에도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국가의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비의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등 부담비율을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